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6
----------	-------

제출년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명칭 변경과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불의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을 명시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명칭을 변경(안 제2조)
-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규정(안 제14조)
- 라.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 마.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일부표현 정비

구 분	기존조례	개정조례
제 명, 안 제1조	자전거이용활성화 ⇒	자전거이용 활성화
안 제3조,안 제4조 안 제5조	각호 ⇒	각 호
안 제4조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 제5조	그밖에 ⇒	그 밖에
안 제5조	규정에 의한 ⇒	따른
안 제7조	주의의무 ⇒	주의 의무
안 제10조 안 제12조	규정에 따라 ⇒	따라
안 제15조	권유토록하고 ⇒	권유토록 하고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9.12.29 일부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0. 8. 12. ~ 9. 1. (제출된 의견 없음)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주민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마포구 소유의 자전거”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하고, “매 5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며,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설치·운영 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의의무”를 “주의 의무”로 한다.

제9조 중 “주민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하며,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활성화 될”을 “활성화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자전거 주차장”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전거이용시”를 “자전거이용 시”로 하고, “권유토록하고”를 “권유토록 하고”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의거 주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및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p>
<p>제2조(정의) (생략) 1.~3. (생략) 4. “<u>주민자전거</u>”라 함은 <u>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마포구 소유의 자전거</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공공자전거</u>”..... <u>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u>.....</p>
<p>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u>각호</u>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생략)</p>	<p>제3조(기본책무) <u>각 호</u>..... 1.~3. (현행과 같음)</p>
<p>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u>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u>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u>각호</u>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3. (생략)</p>	<p>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u>서울특별시 마포구에</u> <u>각 호</u>..... 1.~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u>자전거이용 활성화</u>를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매 5년마다</u>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u>규정에</u>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6. (생략)</p> <p>7. <u>그밖에</u>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p> <p>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u>규정에</u> 의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부서를 <u>설치·운영</u> 할 수 있다.</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u>자전거이용 활성화</u>.....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각 호.....</p> <p>1.~6. (현행과 같음)</p> <p>7. <u>그 밖에</u> 제1항에 따른</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른</p> <p>⑤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u>주의의무</u>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주의 의무.....</p> <p>② ~ ③ (생략)</p>

현행	개정안
<p>제9조(주민자전거의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u>주민자전거</u>를 운영할 수 있다.</p>	<p>제9조(공공자전거의 운영) <u>공공자전거</u>.....</p>
<p>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u>법 제22조의 규정</u>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u>10일 이상</u>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u>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u>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p>	<p>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u>법 제22조에 따라</u> ② <u>10일 이상</u> <u>같은 법 시행령 제11조</u>에 따라</p>
<p>제11조(자전거정비소·대여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이 <u>활성화</u> 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p>	<p>제11조(자전거정비소·대여소 설치·운영) ① <u>활성화</u>될 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u>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u>자전거 주차장</u>,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u>자전거주차장</u></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u>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u></p> <p>제15조(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u>자전거이용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후미등 부착을 권유토록하고</u> 그 밖에 안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16조(시행규칙)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u>매년 4월 22일을</u> <u>자전거의 날로 한다.</u></p> <p>제15조(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① <u>자전거이용 시</u> <u>권유토록 하고</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u>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u></p> <p>1. <u>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u></p> <p>2. <u>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u></p> <p>제1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 10. 25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승 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 출 일 : 2010. 10. 07
- 다. 위원회회부 : 2010. 10. 08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2. 개정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2009. 12. 29 법률 제9,844호, 시행 2010. 6.30)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불합치 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 대비를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각종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안 제5조)
- 나.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함 (안 제14조)
- 다.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 (안 제16조)
- 나.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일부표현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약 152,000천원 필요(380,000명×400원)
- 다. 기 타
 - 1) 개정문안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0.08.12 ~ 09.01)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조례안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09. 12. 29일 법률 제9844호로 개정되고, 2010. 6. 30일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자전거의 날을 정함과 함께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5조에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

안 제14조에서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는 등 법령과 불합치 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안 제16조에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가입예정 자전거보험은 우리구 전체 구민 380,000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1인당 400원씩 약 1억 5천 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당될 예정이고, 자전거 보험의 주요내용은 구민들이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사망, 후유장애, 일정기간 입원 또는 진단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지원 등이 자전거보험의 주요내용이 되는바,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시 우리 구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되며,

또한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자전거 보험

□ 타 자치단체 사례

○ 창원시, 대전시, 이천시, 서울시 강남구, 영등포구 등의 자치단체에서 시행

구 분	보험사	기초인원	보험료	보험조건
창 원 시	LIG손해보험	50만명	2억	· 사망휴유장해 : 29백만원 · 벌금 : 2천만원 · 방어비용 : 1백만원 · 형사합의지원금 : 2천만원
강 남 구	LIG손해보험	56만명	2억2천	· 사망휴유장해 : 33백만원 · 벌금 : 2천만원 · 방어비용 : 1백만원 · 형사합의지원금 : 2천만원

※ 대전시, 이천시는 강남구와 동일한 보험조건 임(보험사도 동일)

※ 보험금 지급 실적(2009년)

- 창원시 : 316건 2억4천만원
- 강남구(2009. 6/1 ~ 12/10) : 53건 1천70만원

□ 우리구 보험 가입 따른 검토

구 분	보험사	기초인원	보험료	보험조건
마 포 구	LIG손해보험 or 현대해상	38만명	152백만원	· 사망휴유장해 : 33백만원 · 벌금 : 2천만원 · 방어비용 : 1백만원 · 형사합의지원금 : 2천만원

○ 자치단체 전 주인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은 개발·판매되고 있으나 자전거 대여소, 업무용 자전거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이 없는 실정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보험사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협의중에 있음

○ 또한 전 주인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의 경우 지방선거 1년이내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이 불가함(선관위 질의 답변내용)

※ 자전거 개인보험 출시(2009.6.22)

- 보 험 사 : 삼성화재
- 보 험 료 : 연간 3~6만원(보장범위에 따라 상이)
- 보 험 내 용 : 사망휴유장애, 교통상해, 가족일상생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07.07.26 조례 제 676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의거 주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민자전거"라 함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마포구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의견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시 자전거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정책방향
3.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4.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7. 그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전거의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이상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정비소·대여소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①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이용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후미등 부착을 권유토록하고 그 밖에 안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자전거대여소에는 안전모를 함께 비치하도록 하고 안전모의 대여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9.29] [서울특별시조례 제4858호, 2009. 9.2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자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2조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시장과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내·외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 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주기)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
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
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11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
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
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 판매시설, 공동주택
단지, 3,000㎡ 이상 대형건축물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⑤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시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
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
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
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30] [법률 제9844호, 2009.1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다.

제8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竹)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6.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7. 「자연공원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②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제15조 삭제 <2009.12.29>

제16조 삭제 <1999.1.21>

제17조 삭제 <2009.12.29>

제18조 삭제 <2009.12.29>

제19조 삭제 <1999.1.21>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삭제 <2009.12.29>

제24조 삭제 <2009.12.29>

제25조 삭제 <2009.12.29>

제5장 삭제 <2009.12.29>

제26조 삭제 <2009.12.29>

제27조 삭제 <2009.12.29>

제28조 삭제 <2009.12.29>

제29조 삭제 <2009.12.29>

부칙<제9844호, 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6.30] [대통령령 제22242호, 2010. 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 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제2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등 주요 교통로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 조성

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제5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 시행방법 등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③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등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공자전거(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공공자전거로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

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매각대금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01.3.27>

제13조 삭제 <2010.6.29>

부칙<제22242호, 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 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단방치자전거로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창원시

제10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창원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제7조의2(자전거 이용자보험) ①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경기도 이천시

제11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19조(자전거의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② 제15조에 따른 공공자전거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16조(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